

한국토지주택공사  
조달계약처

심사서류 작성의 定石  
(건설공사 PQ편)



## 목차 contents

- 1 건설공사 PQ심사 결과 분석
- 2 시공경험평가 점수 산정 부적정(1),(2)
- 3 시공비율 산정 부적정
- 4 배점 착오
- 5 신인도 평가



# 1 건설공사 PQ심사 결과 분석

## 2013 LH 건설공사 PQ심사 현황



### ✓ LH 2013건설공사 PQ 심사현황 분석

금액단위 : 억원

부 문	건수	공사금액 (설계금액)	참여 업체수	건당참여 업체수	탈락 업체수	탈락율
단지	12	6,493	614	51	10	1.63%
주택	51	40,455	3,483	68	9	0.26%
특수지구 (TK 등)	3	1,169	9	3	-	0.00%
소 계	66	48,117	4,106	62	19	0.46%

### ✓ PQ심사시 탈락사유 분석

심사항목	평가요소	탈락사유	비율 (%)
시공품질관련	시공경험평가	점수산정 부적정	5%
공사참여 지분율	시공경험, 기술능력 등	시공능력 공시액 부족	32%
배치기술자	현장대리인 경력	경력부족	32%
실적(동일공사 실적)		실적산정 등	21%
기타		기술개발비율산정 등	10%



## 2 시공경험평가 점수 산정 부적정(1)

- ✓ 평가항목 : 공사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
- ✓ 기준 :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사에서의 시공경험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점으로 산정  
※ PQ심사기준 제6조4항3호.가목.
- ✓ 잘못된 사례 : 공사에서의 시공경험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단순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여 등급 산정

(예시)  
공동도급사인 A사(70%) + B사(30%)로 입찰 참여,  
LH 시공품질점수가 A사(88점) + B사(85점) 인 경우

(업체 작성)  
88점 B등급 = 8.5점 \* 70% = 5.95점  
85점 C등급 = 7.0점 \* 30% = 2.1점  
위 점수를 단순합산 : 5.95 + 2.1 = 8.05점

### 내평가

$$(88점 * 70\%) + (85점 * 30\%) = 61.6 + 25.5 = 87.1점$$

-> C등급인 7.0점으로 평가

심사항목	평가요소	배 점	등 급	평 점
라. 시공품질 관련사항	5) 공사에서의 시 공경험에 대한 평가점수 (입찰공 고일 현재 최근 2 년이내)	10	A : 90점이상 B : 88점이상 C : 85점이상 D : 83점이상 E : 80점이상 F : 80점미만	10.0 8.5 7.0 5.5 4.0 2.5

## 2 시공경험평가 점수 산정 부적정(2) - 단지조성공사

- ✓ 평가항목 : LH PQ심사기준 별표4의 “단지조성공사”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공사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
- ✓ 기준 : 공사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점수는 “단지개발” 분야의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547호)
- ✓ 단지개발분야 : “택지개발” 및 “공원 및 조경시설” 분야 포함
- ✓ 잘못된 사례 : PQ서류 제출시 “택지개발” 분야만 작성하고 “조경시설” 분야의 평가점수를 누락하여 작성

(참고)

현재 LH e-Bid 시스템 상에 공사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 점수가 공개되므로, 주관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 바람

### 내평가

단지개발 시공경험  
평가시 작성분야

“택지개발” 분야 +  
“공원 및 조경시설” 분야



### 3 시공비율 산정 부적정

✓ 평가기준 :  
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평가대상 업종은 당해공사 중 주된 공사의 업종으로 하며,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(시공비율)은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.

※ PQ심사기준 제6조2항

✓ 잘못된 사례  
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주된 공사에 대한 시공비율은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는데 시공능력공시액보다 참여비율이 많을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참여비율로 산정

### 내평가

공동도급시 참여업체의 참여비율을 시공능력공시액과 비교 후 평가



## 4 배점 착오

- ✓ 평가기준 :  
공사규모, 규모, 입찰참가제한방법 등에 따라  
구분하여 평가기준 운용
- ✓ 잘못된 사례 :  
“주계약자관리방식”의 경우, 배점기준상 ( )의 점수가  
적용됨에도 불구하고, “일반방식”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 
탈락하거나, “일반방식”의 배점을 “주계약자관리방식”에  
적용하여 자기평가점수를 과소 산정하는 경우 발생  
※ PQ심사기준 각 공종별 별표의 (주) 참조

### 내평가

공사의 종류, 규모,  
입찰참가제한방법 등에 따라  
평가배점 구분 적용



## 5 신인도 평가

- ✓ 신인도 평가서류 작성시, G2B자료(조달청)와 LH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필히 확인 후 평가서 작성
- ✓ 신인도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 및 평점을 확인 후 점수계산(사. 기타 계약이행의 성실성)

※ 신인도 자료 및 배점 등을 확인하지 않아 평가시 데이터 불일치에 따른 점수 감점으로 탈락 사례 발생

LH 전자조달시스템  
(신인도 관련 제공자료)

입찰 및 계약질서  
유지

기타 계약이행의  
성실성

신인도 관련 확인

G2b 자료(조달청)

+

LH 전자조달시스템





한국토지주택공사  
조달계약처



LH 조달계약처는  
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 
입찰 문화가 확산되도록  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!

